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의자진술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 규정〉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03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영상녹화 관련 규정 및 현황	5
3. 검토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살인·강도·중죄·수뢰·선거·마약·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나.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 다.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도난·유출·조작·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체포·구속된 피의자, ②살인·강도·증뢰·수뢰·선거·마약·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③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4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녹음) ① ----- -----<후단 삭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즉시 석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도·증뢰·수뢰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같은 법이 준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에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

5.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 및 추행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6.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형법」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7.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피의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④ 제3항의-----

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 ----- -----. ⑤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진술은 녹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녹음의 고지, 원본 봉인, 시청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하여는 분실·도난·유출·조작·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영상녹화 관련 규정 및 현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¹⁾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등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와 그 방식,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

-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명성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²⁾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를 근거로 각 수사기관은 영상녹화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정하고 있음. 검찰은 2008년 1월 대검찰청예규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영상녹화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 영상녹화 대상사건, 영상녹화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표 2] 참조), 경찰은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에 영상녹화 관련 규정³⁾을 두고 있음.

2) 「주석 형사소송법(Ⅱ)(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p.442

- 3) 「**경찰수사규칙**」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간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간,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간
-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그 중 하나를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표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주요 내용

구 분	조항	내 용
목적	제1조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u>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 방지, 조사절차의 투명성·효율성 확보</u>
검사의 책무	제2조	영상녹화시 <u>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피의자·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u>
영상녹화 대상사건	제4조	(임의적 영상녹화)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필요적 영상녹화) 1. <u>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관련인지 포함)의 피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u> 2. <u>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u> 3. <u>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u> 4. <u>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u> 5. <u>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u> 6.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피의자 영상녹화 방법·절차	제8조 제11조 등	• 형소법 제24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 당해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u>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u> • 영상녹화 개시하면서 ①검사·참여자 소속·직위·성명, ②영상녹화 사실, ③진술거부권, ④피조사자·동석자 인적사항 ⑤영상녹화 전 강압·회유사실 여부, ⑥영상녹화 시작 시각·장소 등 고지·확인 • 영상녹화 종료 전 피의자에게 추가 진술 기회 부여 •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제작하여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 성명 등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후, <u>피조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 겉면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u>
유의사항	제12조	• 피의자 등의 표정·움직임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인 경우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 • <u>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조사과정 불법성 방지</u> • 영상녹화 종료 후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녹화여부 확인
영상녹화파일 보존	제14조	• 영상녹화물 제작 후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대검찰청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 • 보존파일 외부 유출 금지, 수사·재판·내부교육 목적 외 열람, 복제 금지

한편, 검찰청과 경찰청의 영상녹화실 설치 현황을 보면, 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903개소(2023년말 기준), 경찰청의 경우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총 91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 3] 검찰청 연도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소	885	890	890	899	903

자료: 법무부

[표 4] 경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 전국 950개(경찰서: 850대, 시도경찰청: 100대) 설치 목표로, 매년 10개실 신규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중(現 918개실)이나,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확대에 인한 수요까지 감안할 경우 당초 목표시기('27년 사업종료) 보다 최소 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영상녹화조사실 현황('24. 8월 기준) : △ 시도청(113개실) △ 경찰서(805개실) - 경찰서 영상녹화실 구축 목표: 급지별 치안 수요에 따라 약 850대 (△ 1급지 150개서 : 4대 △ 2급지 39개서 : 3대 △ 3급지 69개서 : 2대) <table border="1"> <tr> <th>구분(목표)</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 <tr> <td>영상녹화실</td><td>790실</td><td>800실</td><td>810실</td><td>820실</td><td>830실</td><td>840실</td><td>850실</td></tr> </table> - 2030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예상 : △ 시도경찰청(128개실) △ 경찰서(850개실)								구분(목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영상녹화실	790실	800실	810실	820실	830실	840실	850실
구분(목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영상녹화실	790실	800실	810실	820실	830실	840실	850실																

자료: 경찰청

반면, 영상녹화 조사실적의 경우 검찰은 실적이 매년 감소하여 2023년 전체 조사 건수 62,564건 대비 4,001건을 영상녹화하는 등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에 그쳤고, 경찰의 경우도 검거 건수 대비 영상녹화(진술녹음 포함) 실시율은 2023년 기준 10.7% 수준으로 나타남.

[표 5] 검찰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적

구 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 조사비율(B/A)
2019년	184,479	19,768	10.7
2020년	111,763	6,553	5.9
2021년	64,991	4,902	7.5
2022년	57,938	4,694	8.1
2023년	62,564	4,001	6.4

자료: 법무부

[표 6] 경찰 최근 3년간 영상녹화·녹음 실적

(단위: 건, %)

구분	'21년	'22년	'23년
합 계(A)	18,110	19,931	23,604
녹 화	14,777	14,422	13,438
녹 음	3,333	5,509	10,166
검거건수(B)	215,055	209,330	220,726
실시율(A/B)	8.4	9.5	10.7

자료: 경찰청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살인·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마약, 뇌물,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신문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문 과정에서 회유·강압 등을 통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죄 유형’ 만을 기준으로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의무적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로 「형법」상 살인, 강도, 중죄, 수죄 범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범죄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섭취·흡입 범죄⁴⁾, 「형법」상 강간 및 추행 죄,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로써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범죄 등 ‘범죄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 다양한 종류의 범죄 중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논리적 개연성이나 객관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검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상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보면,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②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③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④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등 ‘범죄 유형’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언어적·신체적

4)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특징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규정례를 참고하여 ‘범죄 유형’ 외에 피의자의 특성 등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녹화 의무 실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영상녹화 제도의 활성화는 공판과정에서 영상녹화자료 증거 능력 등의 형사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개정안이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특정 범죄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그간 공판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상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왔고,⁵⁾⁶⁾ 2020년 2월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舊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어 영상녹화물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선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유인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동아일보, “[단독] 대법 ‘신문 영상녹화’ 증거 불인정 방침”, 2020. 6. 24)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7]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2020.2.4.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u>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u>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u>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u>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u>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u>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u>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u> 증거로 할 수 있다 (삭제)

따라서 영상녹화를 활성화하여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및 진정 성립 입증수단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영상녹화 의무적 실시에 따라 증가하는 영상녹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 확충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확대에 따른 수사관의 업무부담 가중, 수사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48
